

신·구조문대비표

[KOLAS-SR-004]

현 행	개 정 안
<p>1. 서 론</p> <p>1.1 시험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인정요건은 “<u>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u>”(KS Q ISO/IEC 17025)에 기재되어 있다.</p> <p>2. 직 원</p> <p>2.1 비파괴검사 책임자는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격, 경험, 기술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인된 인증기관에 의해 레벨 3등급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혹은 기사 자격이 있는 자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p> <p><u>실무자는 필요한 자격, 경험, 기술지식을 충분히 가진 직원에 의해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공인된 인증기관에 의해 레벨 3 등급을 받은 자는 이런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 표</u></p>	<p>1. ----</p> <p>1.1 ----- ----- “<u>시험</u> ----- ----- <u>적격성</u>----- ----- -----.</p> <p>2. ----</p> <p>2.1. ----- ----- ----- ----- ----- ----- ----- -----.</p> <p><삭 제></p>

2.1은 감독자와 실무자간의 비율에 대한 지침이다. 실무자의 수가 10명이하이고 레벨 3등급 및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정식직원이 없는 소시험기관인 경우 반드시 동등한 기술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시험기관의 감독직이 정식직원이 아닐 경우 감독직은 적절하게 계약이 되어 하고, 이들의 복무사항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표 2.1

실 무 자 수	감 독 자 수
10명 미만	최소한 비상근 1명
20명 미만	최소한 1명
20~50명	최소한 2명
50명 이상	최소한 3명

2.2 시험기관은 모든 비파괴 실무자가 문서화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필요한 교육을 받은 실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시험결과를 해석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직원 자격과

2.2 -----

교육에 관한 최근까지의 기록을 시험기관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기록목록에는 절차, 기술, 방법(method sheet s)를 승인하는데 적합한 사람 인가를 보여줘야 한다.

3. 장비 및 교정(KS Q ISO/IEC 17025 5.5항)

3.2 장비는 악화되지 않고 남용되지 않게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진 장비는 사용전에 점검이 되어야 한다.

3.6 사내 교정/검증에 쓰이는 표준기에 대한 교정은 국가표준으로 소급할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공인교정기관에 의해 발급받은 교정성적서 또는 인증서로 증명되어야 한다.

4. 시험절차(KS Q ISO/IEC 17025 5.4항)

5. 시험대상 품목의 취급(KS Q ISO/IEC 17025 5.8항)

6. 측정불확도(KS Q ISO/IEC 17025 5.4.6항)

7. 숙련도시험(KS Q ISO/IEC 1

----- sheet
----- s)을 -----
-----.

3. -----
--- 6.4)

3.2 -----
----- 보호되어야
-- . -----
-----.

3.6 -----

--- KOLAS 공인교정기관---

-----.

4. -----
-- 7.2)

5. -----
----- 7.4)

6. -----
---- 7.6)

7. -----

7025 5.9항)

7.1 시험기관이 자체요구조항이
 나 다른 시험기관의 수행능력
 을 토대로 자신의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의 하나는 정기적으로 숙련도
 시험계획에 참여하는 것이다.
 인정기구는 이 계획의 잇점에
 대해 알아야 하고 품질보증
 요구조항의 절대 필요한 부분
 으로서 시험기관이 숙련도 시
 험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
 다. 시험의 품질을 점검하는
 수단으로서 숙련도시험 결과
 를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7.2 숙련도시험의 요건은 신규 인
 정인 경우 반드시 참여 실적
 을 제출하여야 하고 인정된
 시험기관은 3년에 1회이상 K
OLAS 또는 KOLAS가 인정
하는 숙련도 프로그램에 참여
 하여야 한다. 만약, 국내·외에
 적절한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이 없는 경우에는 균질성이
 확보된 시료를 동일 수준이상

---- 7.7)

7.1 -----

7.2 -----

이점

1회 이상 K
OLAS가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으로 인정한 기관이 실시하는
숙련도시험 스킴

의 시험 2개이상의 기관과 비교평가한 결과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 시료의 균질성, 배포, 결과값, 통계적처리, 이상값 산출시 처리방법 등은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에서 시행하는 방법과 동일하여야 한다.

8. 위탁시험기관의 요건(KS Q ISO/IEC 17025 4.5항)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비과괴시험기관인정을위한 추가기술요건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44

----- 2개 이상의 기관과 비교시험-----

8. -----
----- 6.6)

9.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01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 공포한

제2조(폐지고시) -----
----- 「비과괴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

호 : 2007. 4. 9)은 폐지하며, 중전의 지침에 따른 기타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속서 A

A.14 필름 밀도 조각은 색상이 변하거나 바렐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관리되고 저장되어야 한다.

부속서 C

C.2 자성잉크의 자분량(solid content)은 국가표준에 명기된 방법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분무제(aerosol)의 경우는 각 벳치마다 표본시료를 채취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부속서 D

D.3 형광침투액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검사체 표면에서의 자외선 조사세기는 잠재적인 조명도 악화를 감시하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자주 점검되어야 한다.(오염되거나 다른류의 오염 환경이 존재할때는 장비사용시마다 매번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점검은 자외선 광도계를 사용해

-0064호, 2012.02.17.)은 폐지하며, 중전의 추가기술요건-----
-----.

A.14 -----
----- 바렐 수 -----

--.

C.2 -----

----- 배치 -----

-----.

D.3 -----

----- 다른 종류의 -----

서 이루어진다.

D.7 표준결함시험편은 해당 표준에 의해 명기된 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휴대용 시험장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험편의 사용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

부속서 E

E.3 휴대용 장비의 경우 제조사에 의해 치수가 인증된 표준감도 시험편(sensitivity block)가 알려진 결함에 대한 장비의 반응도를 검토하기 통상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E.7 사내에서 치수인증용으로 쓰이는 측정(reference) 표준장비의 교정은 공인교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서 및 교정성적서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부속서 G

(p) 명기가 된 곳이면 승인기준(허용기준)(acceptance standard)

(r) 실무자가 시험 중에 경험한 접근 또는 샘플링의 한계를 보고하는 것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시험보고서(KS Q ISO/IEC

-----.

D.7 -----

- 명기되어 -----.

E.3 -----

-- 시험편(sensitivity block)이

--- 검토하기 위해 -----
-----.

E.7 -----

----- KOLAS 공인교정기관-----

-----.

(p) 명기된 -----

--

(r) -----

<p>17025 <u>5.10</u>항에 명기된 바와 같이)에 포함되도록 요구되는 모든 <u>국면</u>(ASPECT)에 대하여 열거한 보고방법</p>	<p>----- <u>7.8</u>-----</p> <p>-----</p> <p>- <u>측면</u>-----</p> <p>-----</p>
--	--